

프랑스의 스포츠권 보장에 관한 小考*

- 장애인 스포츠의 제도적 보장을 중심으로 -

여 은 태**

I.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불굴의 투지, 도전정신, 인간승리 등등...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의 정신력에서 무한한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는 비장애인이 하는 스포츠에 비해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무관심 속에 신체적 장애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때로는 동정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스포츠는 장애인이 하기에는 힘든 것,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장애인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서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애인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이러한 활동에서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및 의사소통의 장벽은 장애인 선수로서 또는 관중으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게다가 물리적 장벽은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시설과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막고 있으며, 법적·정책적 장벽도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프랑스의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 투고일자 : 2016. . 심사일자 : 2016. . 게재확정일자 : 2016. .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1) Janet E. Lord 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역, 공동체, 2016, 185면.

장애인 스포츠를 이용한 관광홍보문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장애인도 즐기는 스키! 그 선두에는 프랑스 스키학교(ESF)가 있다. 좌식 스키를 위해서는 자격증을 갖춘 모니터들이라도 부수적으로 특수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준비이다. 론알프스 지방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스키-Handiski (dualski, 연동의자 등)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스키학교 장비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ESF에서 강좌를 받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수강료도 일반 스키자들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비에는 리프트도 포함되며 좌식 스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반자(모니터 이외의)에게는 대개 스키 비용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정책에 프랑스 장애인스포츠연맹도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 활동과 대자연에서의 레저활동을 폭 넓게 후원함으로써 술선수범하여‘경기장 밖에서’의 활동에 대해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스포츠(Handi-sportifs) 활성화와 관광을 연결시키려는 방안이다. 몇몇 스키학교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알파인 스키 모니터들이 시즌의 반 이상을 Handiski고객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도이다。」²⁾

II. 스포츠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의 보장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정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특별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³⁾ 프랑스 법률에서“장애(handicap), 장애인(handicapé)”이라는 용어는 「장애노동자의 직업재활에 관한 1957년 법률」⁴⁾을 통하여 최초로 명시되었으며⁵⁾ 1975년에 제정된 「장애인기본법」⁶⁾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장애인의 스포츠와 레저활동의 접근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지원, 장애인 시설,

2) 프랑스 관광청 한국어 홈페이지 : <http://kr.france.fr/ko/information/21744> (2016년 12월 5일 검색).

3) 프랑스의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루이 14세가 창설한 상이군인시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 본고에서는 현대적 입법 근거에 관한 내용만을 정리한다.

4) Loi n° 57-1223 du 23 novembre 1957 sur le reclassement professionne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5) 동법률로 기존의 장애를 뜻하던 다른 용어인 불구(infirmes), 부적응(inadaptés), 불능(incapables) 등의 용어를 이용하지 않은 점에서 차별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률에서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는 빠져 있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 이후, 프랑스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개념의 확대와 공동체법에 근거한 사회의료정책, 보건정책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⁷⁾

2. 스포츠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이리하여 마침내 프랑스의 입법자들은 2005년 제정된 「동등한 권리와 기회, 장애인의 시민참여에 관한 법률」⁸⁾을 통해 장애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의 마련과 장애인의 특별한 권리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서는“신체적·감각적·정신적·인지적 또는 심리적인 기능요인의 실질적·지속적·영구적 악화, 복합장애, 일상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일체의 개인행동의 제약 또는 사회적 삶에서의 참여의 제한”을 장애에 대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⁹⁾

2005년 법률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삶에서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이 문화, 스포츠, 레저, 관광 등의 활동에서 규범적 차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한편,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동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고용과 훈련 :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훈련과 장애인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 법규 :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 스포츠 활동을 대한 규정
- 훈련을 통한 개발 :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구조적 장치가 수반된 환경 안에서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활동으로의 접근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서 동법은 장애에 대한 특별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권(droit à la compensation)¹¹⁾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가지는 보상권으로서 스포츠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스포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접근권의 보장은 삶의 질에서 가장 먼저

7) Philippe Didier-Courbin, Pascale Gilbert, “Éléments d'information sur la législ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en France : de la loi de 1975 à celle de 2005”,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2, 2005, pp.207-227.

8)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9) 제2조 제1항

10) Sénat, Loi Handicap : des avancées réelles, une application encore insuffisante (Rapport d'information n°635), 2012, p.103.

11) 제11조

4 _ 인권 이론과 실천 제20호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장애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며 차별을 받는 가장 우선적 요소임을 동법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권의 측면에서 접근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이동, 이용, 행동에 있어서 건축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¹²⁾

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공공을 수용하는 시설(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이하 ERP)은 화재예방과 공중보건에 관한 건축법상의 일반적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의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¹³⁾ 따라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ERP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스포츠 시설에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설비를 완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여 2010년 1월 1일까지 현존하는 ERP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5년 이내인 2015년 1월 1일까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접근성 보장원칙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은 국제사회에서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 인권 관련 논의에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편성은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불가분성은 인권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¹⁴⁾ 즉, 어떤 인권은 받아들이고 다른 인권은 거부하는 것으로 고르고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인권을 배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9조에서도 장애인 인권으로서의 접근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⁶⁾

12) Roy Compte, "Sport et handicap dans notre société : un défi à l'épreuve du social", Empa n, n°79, 2010, p.20.

13) Art. R111-19-2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14) Jim Ife,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여지영 역, 인간과 복지, 2001, 39면.

15) Jim Ife, 앞의 책, 40면.

16)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 | |
|--|
| <p>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확인 및 제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p> <p>(a)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의 시설;</p> <p>(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p> |
|--|

Le calendrier de l'accessibilité

Février 2005	Les communes et communautés de communes de plus de 5 000 habitants sont invitées à créer des commissions d'accessibilité.
Octobre 2006	Les locaux où sont implantés les bureaux de vote doivent être accessibles le jour du scrutin.
Janvier 2007	Application de la loi pour le bâti neuf à compter du dépôt du permis de construire pour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RP) et les logements.
Janvier 2008	Extension pour le logement neuf de l'obligation d'accessibilité aux terrasses et balcons neufs.
Février 2008	Publication du schéma directeur de mise en accessibilité des services de transports; lancement des services de transports de substitution pour les réseaux souterrains de transports ferroviaires ou de transports guidés qui demeureront inaccessibles.
Janvier 2009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RP) devront avoir réalisé un diagnostic budgété d'accessibilité.
Janvier 2010	Les schémas directeurs et plans de mise en accessibilité doivent être réalisés dans les communes.
Janvier 2011	Les services ouverts au public dans les préfectures deviennent accessibles; lancement des services de transports de substitution.
Janvier 2015	Date butoir d'adaptation des services de transports terrestres, des logements et des ERP antérieurs à 2007 qui, sauf exception, seront tous pleinement accessibles.

<표-1 : 장애인의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¹⁷⁾

III. 장애인 스포츠 지원정책

<p>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a)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개발, 공포 및 감시;</p> <p>(b)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구들이 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p> <p>(c) 장애인들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들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훈련 제공;</p> <p>(d)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p> <p>(e)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동반지원과 매개체의 형식 제공;</p> <p>(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p> <p>(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성을 촉진;</p> <p>(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p>

17) Roy Compte, Accessibilité et pratique sportive pour l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Communication aux Assises du Sport, 2009, p.3.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 모든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¹⁸⁾

장애인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무능력하고, 비장애인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존재라는 편견에 시달려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삼은 사회에서 장애인은 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경제영역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아울러 국가는 경제적 소외를 사회적 혹은 문화적 소외로까지 방치하였다.¹⁹⁾ 오늘날 장애인 스포츠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정체육, 특수체육, 재활체육 등 다른 용어가 대신 쓰였으며 이런 말들에는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 목적으로 스포츠가 활용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⁰⁾

반면, 프랑스에서 스포츠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의 한 영역이며 스포츠는 모두를 위하여(Sport pour tous)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고 있다.²¹⁾ 또한 「스포츠와 육체적 활동의 구성과 증진에 관한 1984년 법률」²²⁾에서 스포츠 활동은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에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며 스포츠 활동의 증진과 개발은 궁극적으로 공익(intérêt général)을 도모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스포츠가 사생활 부문만이 아닌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업인 공공서비스로 간주되고 있고, 그러한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사조직에 부여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은 특권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와 공공서비스 임무를 위임받은 스포츠단체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²³⁾

18) Janet E. Lord 외, 앞의 책, 22면.

19) 윤수정,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 공법연구, 제44권 3호, 2016, 2-3면.

20)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 이젠 바꿀 때가 됐다’, 스포츠Q 인터넷판 2014년 1월 30일자 기사,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 (2016년 12월 5일 검색).

21) <http://www.vie-publique.fr/politiques-publiques/politique-sportive/sport-pour-tous/>.

22) Loi n°84-610 du 16 juillet 1984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promotion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23) 이광윤,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스포츠와 법, 제9권, 2006, 230-231면.

1. 국가를 통한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지원

프랑스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체육부가 관장한다.²⁴⁾ 프랑스 체육부는 2015년 보고서에서도 설명되다시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의 증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신감의 회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qualité de vie)의 향상을 돕고 사회적 연대와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²⁵⁾

또한 2003년 유럽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체육부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설립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스포츠와 장애지원센터(Pôle Ressources National Sport et Handicaps, 이하 PRNSH)와 국립스포츠발전센터(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이하 CNDS)를 통한 국가적 지원을 들 수 있다.

1) 스포츠와 장애지원센터 (PRNSH)

2003년 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PRNSH는 스포츠와 장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전문적 기술의 개발, 양질의 훈련방법 보급, 우수 사례의 공유, 새로운 실험을 통한 스포츠와 장애 분야의 관계 부처 공무원, 당사자 등의 능동적이며 특성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PRNSH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⁶⁾

2) 국립스포츠발전센터 (CNDS)

체육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CNDS는 2006년 「국립스포츠발전센터 설치에 관한 시행령」²⁷⁾에 따라 설립된 행정적 공공시설(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이다. CNDS는 프랑스의 각 레지옹(Région)에서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프랑스 전역에서 균형 있는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CNDS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구매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 약 170만 유로를 장애인의 활동에 대한 경비

24) 원어의 정식 명칭은 마을, 청소년, 체육부(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이나 본고에서는 체육부로 약칭한다.

25)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a pratique sportive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2015, p.4.

26) PRNSH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www.handiguide.sports.gouv.fr ; www.handicaps.sports.gouv.fr.

27) Décret n° 2006-248 du 2 mars 2006 portant création du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로 지급하였다.²⁸⁾

2. 장애인 스포츠단체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안전성 확보, 장애인의 입장에서 스포츠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인 사항(예를 들어 경기 진행방식, 벌칙 규정, 지도방법, 장애인 스포츠 장비, 장애인 스포츠 활동장소 등)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프랑스의 장애인 스포츠는 2개의 장애인 스포츠 관련 협회를 통해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는 신체적, 감각적(시각, 청각)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장려를 목적으로 조직된 프랑스 장애인스포츠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handisport 이하 FFH)과 다른 하나는 지적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프랑스 특수스포츠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u sport adapté, 이하 FFSA)이다.

FFH는 「협회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에 근거하여 1954년 프랑스 절단장애인협회(Association sportive des mutilés de France)로 창설되었으며 이 후 몇 번의 명칭 개정이 있었으나 1977년부터 FFH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FFSA는 1971년 프랑스 정신지체장애인 교육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éducation par le sport des personnes handicapées mentales)으로 설립되었으며 1983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FFH와 FFSA는 프랑스법상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associ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으로 등록되어 있다.

FFH와 FFSA는 60여 종목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수행할 목적을 가진 단체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체육부로부터 특수한 연맹(fédération spécifiques)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FFH, FFSA는 2014년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교육자 양성비용, 자원봉사자 연수 등에 관하여 국가적 지원의 일환으로 약 443만 유로의 보조금(subvention)을 지원받았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의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²⁹⁾

IV. 나오며

28)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a mission sport et handicap, 2014, p.6.

29)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앞의 보고서, p.5.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지 신체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응력의 향상을 위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촉발시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프랑스 사회·경제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의 위원인 André Leclercq는 2006년 보고서에서 “스포츠는 스포츠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스포츠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lien social)의 요소이기에 총체적 사회적 사실(fait social total)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배제 없이 함께 사는 삶(vivre ensemble)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도 스포츠 시설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이어야 하며 사회 통합적 기능을 추구함에 있어 접근성은 필수적 고려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²⁾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스포츠 시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³³⁾ 실질적으로 이들의 스포츠 활동의 참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는 탄소섬유 재질의 특수의족을 착용하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비장애인 선수와 겨뤄 남자 400m 준결승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자 1600m 계주 예선에 참가하여 소속팀이 2위를 함으로써 장애인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장애는 더 이상 물리적 방해요소가 아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스포츠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의족은행”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재활치료사인 Jean-Luc Cléménçon에 의해 설립된 Entr'aide협회는 “달리기를 위한 블레이드(Une lame pour courir)프로젝트”를 통해 카본 소재의 의족을 구입하여 다리가 불편한 장애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민간차원의 장애인 스포츠 지원

30) 김상겸,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451면.

31) Avis du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sur le rapport présenté par M. André Leclercq au nom de la section du cadre de vie, Le sport au service de la vie, 2006, p.6 이하.

32) Roy Compte, 앞의 논문 (2010), p.14.

33) 이에 관하여 홍양자, “체육이 장애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9권 2호, 1999, 78면 이하 참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활동은 SNS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달리는 것은 특권이 아닌 권리다”라는 슬로건으로 30명의 아이에게 43개의 의족을 제공하였다.³⁴⁾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적,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구별 없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적 특징과 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권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스포츠권 보장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4) Des prothèses de champion pour que les enfants amputés puissent courir, Le Figaro 인터넷판, 2016년 11월 17일자 기사, <http://sante.lefigaro.fr/article/des-protheses-de-champion-pour-que-les-enfants-amputes-puissent-courir> (2016년 12월 5일 검색).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상겸,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 윤수정,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 공법연구, 제44권 3호, 2016.
- 이광윤,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스포츠와 법, 제9권, 2006.
- 홍양자, “체육이 장애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9권 2호, 1999.
- Janet E. Lord 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역, 공동체, 2016.
- Jim Ife,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여지영 역, 인간과 복지, 2001.

2. 해외문헌

- Philippe Didier-Courbin, Pascale Gilbert, “Éléments d'information sur la législ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en France : de la loi de 1975 à celle de 2005”,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2, 2005.
- Roy Compte, “Accessibilité et pratique sportive pour l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Communication aux Assises du Sport, 2009.
- _____, “Sport et handicap dans notre société : un défi à l'épreuve du social”, Empan, n°79, 2010.
- Avis du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sur le rapport présenté par M. André Leclercq au nom de la section du cadre de vie, Le sport au service de la vie, 2006.
-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a mission sport et handicap, 2014.
-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a pratique sportive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2015.
- Sénat, Loi Handicap : des avancées réelles, une application encore insuffisante (Rapport d'information n°635), 2012.

